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3일, 주철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철현의원)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연장)

현행법은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주철현의원안은 해당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영세어민을 지원하고 출원으로 인한 어업권 등 취득 유인을 제공하여 어업·양식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최근 어촌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어촌경제의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협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현행법은 ①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②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 ③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④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⑤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을 받는 농어업인에게 등록면허세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주철현의원안은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농어업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 등이 용자 시 부담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저금리 용자를 지속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협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연장)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은 조합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9%의 세율(20억 초과분은 12%)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법

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로,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의 재원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구체적으로, 조합법인등은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주철현의원안은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은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 제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의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

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